

# 1.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

<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신설>

## 요건

- ① 제조업자가
- ②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
- ③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
- ④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

→ **최대 3배!**

## 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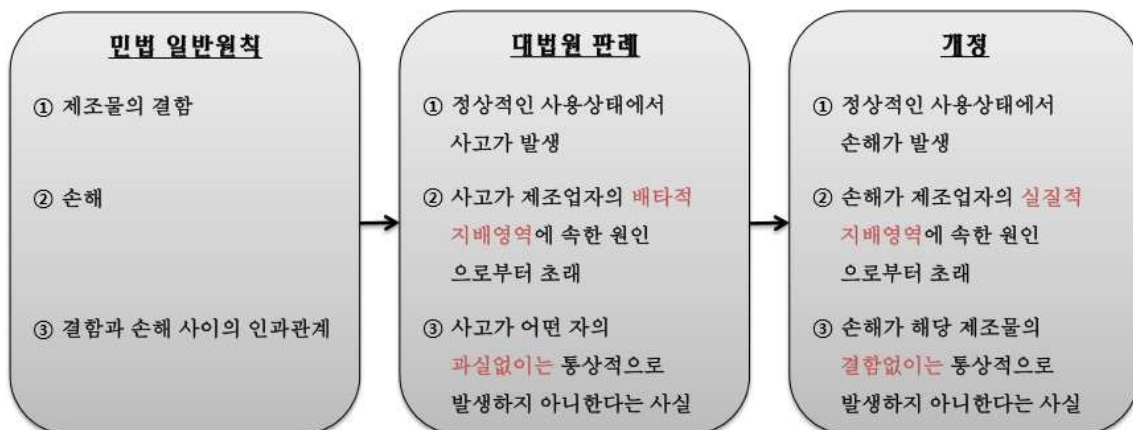
- 고의성의 정도
-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
-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
-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받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
-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
- 제조업자의 재산상태
-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

## [참고]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
| <b>하도급법</b><br>(제35조)    |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탈취, 부당 단가인하, 부당 발주취소, 부당 반품행위   | 3배 |
| <b>대리점법</b><br>(제34조)    |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,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               | 3배 |
| <b>가맹사업법</b><br>(제37조의2) |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허위·과장 정보제공, 부당 거래거절행위             | 3배 |
| <b>신용정보보호법</b><br>(제43조) |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·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·훼손      | 3배 |
| <b>정보통신망법</b><br>(제32조)  |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 | 3배 |
| <b>개인정보보호법</b><br>(제39조) |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       | 3배 |
| <b>기간제법</b><br>(제13조)    | 사용자의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           | 3배 |

## 2.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

<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신설>



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해당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...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  
(대법원 2004.3.12. 선고 2003다16771 판결)

## 실질적 지배영역 vs 배타적 지배영역

실질적 지배영역이 배타적 지배영역보다 입증책임을 보다 완화

- ☞ 배타적 지배영역 : 결함이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임을 요구.  
제3자의 개입이 배제
- ☞ 실질적 지배영역 : 제3자가 제공한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더라도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제조업자의 지배에 속한 원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면 추정

## 결함없이는 vs 과실없이는

현행 제조물책임법이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

# 3.공급업자의 책임 강화

<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개정>

**공급업자는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충적 책임을 부담**

### 기 존

- 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었을 것
- ② 그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·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했을 것
- ~~③ 공급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이전 공급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~~
- ④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것

### 개 정

- 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었을 것
- ② 그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·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했을 것

#### 면책요건

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이전 공급업자를 고지하면 손해배상책임 면제

면책요건 증명책임 전환

## [참고] 체크리스트

### 전사적 PL 검토 목록

- 사내체제
  - 경영진의 PL의식 정도
  - 경영방침이 설정되었는가
- 조직
  - PL조직이 있는가
  - PL업무가 명확하게 부서별로 지정되었는가
  - 각 작업자에게 PL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했는가
- 교육
  - PL과 제품안전에 대한 교육체계가 있는가
  - PL교육 강사는 준비되었는가
  - PL전담자 양성과정, 협력사 교육 등이 있는가

### 단계별 PL 검토 목록

- 설계·개발단계
  - 모든 안전규정, 기준, 법규 등이 문서화로 보관되었는가
  - 안전한 설계라고 확신하는가
  - 사용자의 지식, 습관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
  - 인간공학적 분석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
  - Fool Proof, Fail Safe가 되어 있는가
  - 안전장치는 장착되었는가
  - 예견되는 오작동, 오용, 오작용에 대한 방안을 설계했는가
  - 사용되는 환경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는가(온도, 습도 등)
  -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있는가
- 제조단계
  - 제조공정이 명시되어 있고, 명시된 대로 제조하는가
  - 설계변경, 제조공정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가
  - 제조상의 결함은 검사에서 검토되는가
  - 검사기준은 합리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규정대로 실시하는가
  - 불합격된 제품의 처리 규정은 명시되어 있는가
  - 상품을 충분히 보호하는가
  - 유통과정 수송방법은 합리적으로 명시되었는가
  - 관련 법률은 검토되었는가
  - 하청업체도 PL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
  - 사양서대로 제작하고 있는가
  - 납품시의 검품에 만전을 기하는가
  - 품질보증 제도가 있는가

Global 기업법무, 공정거래, 제조물책임, CP, PL, Claim, 조사대응, 손해배상, 행정소송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